

□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지적사항

사례1> 캡슐커피, 소품, 선풍기 등의 물품을 구매대행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실제로 구매한 상기 물품과는 다르게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견적서를 임의 제출받아 지출

사례2> 업체로부터 물품을 미리 납품받아 사용한 후 대금 정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새로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품의서, 물품검수조서 등)를 작성

사례3> 부서마다 유사한 사무용품 내역이나 적용 단가가 다르며 견적서 발행 업체와 실제 채권자가 상이

□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 실제 납품 받고자 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비교 견적 등 적정 예산 품의 금액을 검토하여 사무관리비 집행할 것